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70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 민홍철·장종태·문진석

복기왕 • 한정애 • 정준호

허성무 • 이재강 • 한준호

신정훈 • 위성락 • 위성곤

장철민 • 박홍근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감정인이 위증 등을 하도록 교사(敎唆)한 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발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감정인을 교사(敎唆)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 건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사의 죄) 타인을 교사(敎唆)하여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인정한"을 "인정하거나, 증인·감정인을 교사하여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2(교사의 죄) 타인을 교
	사(敎唆)하여 제14조제1항 본문
	의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
	<u>벌한다.</u>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	제15조(고발) ①
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	
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u>인정</u>	인 <u>정</u>
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	<u>하거나, 증인·감정인을 교사하</u>
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	여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	범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한
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